

대전지방법원 2022. 6. 16 선고 2021가단7808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
담당변호사 박은태

피 고 B
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진혜
변 론 종 결 2022. 5. 19.
판 결 선 고 2022. 6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소외 C이 별지 표시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. 5. 31. 맺은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25,507,2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5,507,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. 요지는, 원고의 채무자 C이 자신 소유의 전 재산인 별지 표시 부동산 중 그 법정상속지분인 2/13 지분을 피고에게 넘기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니 이러한 계약은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
2. 법리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,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(민법 제1008조)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(민법 제1008조의2 제1항),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

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.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.

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

위 판례에서 ‘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’고 하였으나, 본 사안에서는 수익자로 지목된 피고가 그러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새길 일이다.

3. 판단

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.

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D(E감정평가사사무소)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의 채무자 C은 돌아가신 부친, 즉 피상속인인 망 F(2020. 5. 31.

사망)로부터의 상속재산인 위 토지, 건물에 관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와 달리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한 피고의 기여 정도와 내용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등을 종합해 보면, 당시 C이나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.

4. 결론

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므로,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판사 오현석

별지